#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종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01 발의연월일: 2025. 2. 17.

발 의 자:김종양・고동진・김상훈

한기호 • 박성훈 • 강선영

서천호 • 이성권 • 김미애

서일준 · 김희정 · 김태호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이상동기범죄와 각종 재난·재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상황에 대하여 경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나, 현행법에 따른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의 감면 규정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현장에서는 적극적인 대응 시 보호받기어렵다는 인식 때문에, 경찰관이 적극적인 법집행을 주저하는 원인이되고 있음.

이에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구조·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억류·피난 조치의 상황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, 직무 수행상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민·형사상 소송부담 등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없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상 형의 감면에서 특정범죄 요건을 삭제하여 모든 범죄에 대하여

정당한 법집행으로 인한 민·형사상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책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자 함(안 제5조 및 제11조의5). 법률 제 호

##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중 "매우 긴급한"을 "긴급한"으로, "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"을 "이동을 제한하거나 대피시키는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위험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그 장소에서 퇴거시키거나 그 장소의 접근을 금지시키는 것

제11조의5의 제목 중 "형"을 "민·형사상 책임"으로 하고, 같은 조 각호 외의 부분 중 "다음 각 호의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"을 "사람"으로, "형"을 "그 손해에 대한 민사 또는 형사책임"으로 하며, 같은 조 각호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행 개 아 제5조(위험 발생의 방지 등) ① 제5조(위험 발생의 방지 등) ① -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 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 는 천재(天災), 사변(事變), 인 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, 교 통사고, 위험물의 폭발,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, 극도의 혼잡,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 1. (생략) 1. (현행과 같음) 2.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 2. 긴급한-----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-----<u>이동</u>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대피시키는---3. 위험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 <신 설> 한 사람을 그 장소에서 퇴거 시키거나 그 장소의 접근을 금지시키는 것 3. (생략) 4. (현행 제3호와 같음) ② ~ ④ (생 략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11조의5(직무 수행으로 인한 제11조의5(직무 수행으로 인한

형의 감면) 다음 각 호의 범죄 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 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・신 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, 경 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 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 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 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 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 우,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 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 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 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 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 나 면제할 수 있다.

1. 「형법」 제2편제24장 살인의 의 죄, 제25장 상해와 폭행의죄,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강간에 관한 범죄, 제38장절도와 강도의 죄중 강도에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

민ㆍ형사성	<u> </u>	의 감면)	<u>사람</u>
		손해에	
민사 또는	형사책	<u>임</u>	
<u>&lt;삭 제&gt;</u>			

2.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<삭 제>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가정폭 력범죄, 「아동학대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 른 아동학대범죄